##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730 발 의 년 월 일: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:이종환, 강석주, 고광민,
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춘선, 오금란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 황철규 의원(22명)

### 1. 제안이유

○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고,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인 온라인 공간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성희롱 · 폭언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게시물 관리 조항을 규정으로써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하거나 성희롱·폭언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게시물 관리 규정을 강화함(안 제5조제4호 및 같은 조제6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"특정인을 비방하거나"를 "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 비하, 모욕, 비방하거나"로 하고, 같은 조제6호 중 "욕설"을 "성희롱·폭언·욕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생 략)	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(현행
	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	4.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,
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	비하, 모욕, 비방하거나 명예훼손
	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<u>욕설</u> ·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	6. <u>성희롱·폭언·욕설</u> ·음란물 등 불
	건전한 게시물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삭제가 가능한 게시물에 대해 추가한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규정에 의한 게시물 관리 추가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제승

☎ 02-2180-7953

e-mail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